

# 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30일 15시 32분



# 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허가의 취소 등	3

## 허가의 취소 등

2014.04.17 조회수 609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12-0028
담당부서	문화예술과
상위법령	문화예술진흥법
조례	여수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
유형	1호 - 허가
등록사유	문화공보
법령공표일	기존규제
존속기한	2000-10-15
규제시행/폐지일	2000-10-15
규제목적	시민회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 및 시설물 보호
규제내용	제7조(허가의 취소등)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. 1.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2.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3.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. 공익상 필요할 때 5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6. 제6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견될 때
등록후변동결과	○ 2012. 7. 18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

목록

이전글

< 전라남도 여수시-2012-0027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2-0033 >

# Yeosu Web Contents

